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대리인 및 인공지능생성물 표시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1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내대리인 업무 추가	2
2. 인공지능생성물 표시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0.

다. 회 부 일 : 2026.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내대리인 업무 추가(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가. 개정안 요지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함(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 ----- 1. <u>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외·해외사업자로서 이용자수·매출액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추가하는 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가 보유한 정보를 전달받는 연락 창구에 가까운 지위에 있고,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물품·서류 제출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 실제로도 국내대리인과 해외 본사 간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 규제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¹⁾.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이용자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해외 본사의 실질적인 협조 없이 이용자 불만의 처리나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불편 관련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계약상 내지는 법령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둘째, 개정안의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신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접수하는 것인지 문언상 목적어가 누락되어 있고²⁾, 해석상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포괄하게 되므로 국내대리인 및 그를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무엇을 접수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이용자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윤혜선,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76호, 2025.3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회신자료 접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112신고의 접수’라고 규정하는 등, 목적어 없이 ‘접수’라는 용어를 쓰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문언상 접수의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신고’, ‘요청서’나 ‘의견서’ 등 목적어를 추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가 어떠한 업무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의무를 규정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측면에서 추가적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인공지능생성물 표시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43조의2, 제7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인공지능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고지·표시 의무를 부과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함(안 제43조의2제1항).
- 인공지능 정보제공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의 고지·표시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2항).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고지·표시 의무 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의 고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인공지능시스템을 이

현행	개정안
	<u>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①</u> <u>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발</u> <u>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u> <u>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u> <u>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u> <u>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u> <u>하여 생성한 음향·이미지 또</u> <u>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u> <u>작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하려는</u> <u>자(이하 “인공지능 정보제공자”</u> <u>라 한다)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u> <u>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u> <u>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u> <u>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u> <u>예술적·창의적 표현물 등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목적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할 수 있다.</u> <u>②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는</u>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u> <u>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u> <u>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u> <u>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u> <u>는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u> <u>· 법률·금융 등 대통령령으로</u>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u> <u>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u>

현행	개정안
4의2. ~ 4의6. (생략)	<u>여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u>
5. ~ 24. (생략)	4의4. ~ 4의8. (현행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와 같음)
④ (생략)	5.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명예훼손, 성범죄, 사기 등 각종 피해가 증가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관련 국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경우 2024년 3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킨 바 있음³⁾.

3) 「인공지능법」(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탈, 외국법률번역DB)

전문 (134) 딥 페이크를 생성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는 배포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임을 라벨로 표시하고 그 인공 출처를 공개하여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고 구별 가능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투명성 의무의 준수는 특히 제3자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콘텐츠가 명백하게 창의적, 풍자적, 예술적, 허구적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이나 그 산출물의 사용이 현

-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⁴⁾.
-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⁵⁾.

장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과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딥 페이크에 대한 투명성 의무는 저작물의 유용성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활용 및 사용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표시 또는 향유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해당 생성 또는 조작된 콘텐츠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인공지능기본법의 수범자는 인공지능사업자이므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수범자에 포함되는지 모호하여 관련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서비스 및 인공지능사업자를 규율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정보제공자 규정을 두고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인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를 직접 수범자로 하여, 생성된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것임을 고지·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여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그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표시 의무도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조문만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3조의2는 인공지능 정보제공자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라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고 특히, 전문분야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고지 또는 표시의 훼손 및 위조 또는 변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정보가 그 표시가 훼손된 채로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와 더불어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에 대한 훼손 및 위·변조 금지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규율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보제공자에게 고지·표시 의무를 부여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고지·표시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여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 고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법문언상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 고지·표시 의무는 부여되지 않고,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정⁶⁾상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사업자가 규제의 회피를 목적으로 ‘비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추천 인공지능, 판단 지원, 분석 인공지능임을 주장하여 규제를 회피할 수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있고, 기능적으로 생성·추천·판단 기능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 고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전문분야의 결과물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3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결과물이 전문분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곤란할 수 있고,

전문분야에 해당됨이 명확하더라도, 단순히 전문분야이기만 하면 인공지능 활용 정도나 목적에 무관하게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용자 보호에 유효할 수는 있겠으나, 활용 정도나 이용 목적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고지·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한 예외를 두거나 규율하고자 하는 전문분야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해 허위 정보 확산 및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에 수용하나,

전문분야 결과물 고지·표시 의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활용 정도 및 내용상 전문적 판단·조언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예외 사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 관련 규제 강화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해외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플랫폼의 표시 기능 제공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제반 환경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관련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중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장르별 특수성 및 새로운 장르 출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현물로 표시 의무의 예외 위임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개정안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중복 규제 및 인공지능 생태계에의 큰 혼란 초래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중복 규율 문제 해소 및 규율 대상과 의무 주체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